

공정한 경쟁과 상생의 가치 실천을 위한 남양인의 업무 가이드라인

컴플라이언스 자율준수편람

(하도급 분야)

(2023. 12. 제정)

Enjoy the Quality



편람 개정이력

NO	제 · 개정일	개정사유 및 개정사항
0	2023.12.22	자율준수편람 최초 제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목 차

1. 하도급범이란?	1
1.1 개념	1
1.2 적용 범위	2
1.3 법적용 대상 사업자	2
1.4 법적용 대상거래(제조)	3
1.4.1 제조위탁의 유형(사업자가 물품의 제조·판매·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	3
1.4.2 하도급거래에서 제외되는 위탁행위	3
2. 업무 단계별 주요의무 & 금지사항	4
2.1 계약체결 시	4
2.1.1 서면 교부 및 서류 보존 의무	4
2.1.2 부당한 특약 설정 금지	5
2.1.3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6
2.1.4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7
2.1.5 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의무	8
2.2 계약이행 시	8
2.2.1 부당한 위탁(발주)취소 및 수령 거부 금지	8
2.2.2 부당반품의 금지	10
2.2.3 검사 및 검사 결과 통보 의무	11
2.2.4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 금지	12
2.2.5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13
2.2.6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행위 금지	14
2.2.7. 부당한 경영간섭(전속거래 강요행위 금지 및 경영정보 요구) 금지	16
2.2.8.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16
2.2.9. 보복조치 금지	17
2.3 대금지급단계의 하도급법상 규제내용	18
2.3.1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18
2.3.2 선금금 지급 의무	19
2.3.3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20



2.3.4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의무	21
2.3.5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협의 개시 의무	22
2.3.6 하도급 대금 연동계약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	23
3. 업무 가이드라인(Do's & Don'ts)	25
3.1 계약체결시	25
(1) 서면 교부 및 서류 보존 의무	25
(2) 부당한 특약 설정 금지	26
(3)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26
(4)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27
(5) 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의무	27
3.2 계약이행시	28
(1) 부당한 위탁(발주)취소 및 수령 거부 금지	28
(2) 부당반품의 금지	29
(3) 검사 및 검사 결과 통보 의무	29
(4)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 금지	30
(5)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행위 금지	30
(6) 부당한 경영간섭(전속거래 강요행위 금지 및 경영정보 요구) 금지	31
3.3 대금 지급시	32
(1)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32
(2) 선급금 지급 의무	33
(3)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의무	33
(4)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협의 개시 의무	33
(5) 하도급 대금 연동계약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	34
4. 위반시 제재	35
4.1 분쟁조정(하도급법 제24조의4 내지 6)	35
4.3 시정조치(하도급법 제25조)	35
4.4 과징금 부과 (하도급법 제25조의3)	35
4.5 과태료 부과(하도급법 제30조의2)	35
4.6 벌칙(하도급법 제30조)	36
4.7 양벌규정(하도급법 제31조)	36



4.8 손해배상책임(하도급법 제35조) 36

4.9 기타..... 36

5. 체크리스트 37

1. 하도급법이란?

1.1 개념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원사업자(대기업)와 수급사업자(중소기업)간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임(하도급법 제1조).
- 하도급법은 다음과 같이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발주자의 의무사항, 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하도급법 체계도]

하도급 거래의 규제내용	목적 및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 적용업종: 제조, 수리, 건설, 용역 • 적용대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 및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 • 적용기간: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단, 3년 이내 신고시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 경과 후에도 조사 개시가 가능하며, 기술탈취 및 유용의 경우 7년) 	
	원사업자의 준수 의무사항 (10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교부, 서류보존 의무 • 내국신용장개설 의무 •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의무 •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금금 지급 의무 •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의무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 • 설계변경 및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및 통지 의무 • 하도급 대금 연동에 따른 조정 의무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1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특약 설정 금지 •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 부당반품 금지 • 물품구매대금 부당결제 청구 금지 •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금지 •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 탈법행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 감액 금지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 부당한 대물지급 금지 • 보복조치 금지
	발주자의 준수 의무사항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의무 	
	수급사업자의 준수 의무사항 (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보존 의무 • 신의성실의 원칙 준수 • 원사업자의 위법행위 협조거부 	



1.2 적용 범위

- 하도급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하도급법상 규정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하도급법상 규정된 위탁의 범위(제조, 수리, 건설, 용역)에 포함되어야 하며, 거래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하도급법이 적용, (단, 3년 이내 신고시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 경과 후에도 조사 개시가 가능하며, 기술탈취 및 유용의 경우 7년)
- 거래종료일의 의미

제조/수리/지식정보성과물의 위탁	역무 공급 위탁	건설위탁
목적물 납품 또는 인도한날	역무 공급 완료한날	공사 완공일

1.3 법적용 대상 사업자

-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에 있어 물품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용역을 수급인에게 도급(일의 완성을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하는 자를 발주자,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아 중소기업에게 하도급을 주는 사업자를 원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은 중소사업자를 수급사업자라 함(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3항). 또한, 발주자 없이 물품의 제조·판매·수리 등을 위하여 당사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도 하도급이라고 함.
- 하도급법은 재하도급을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도급 받은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가 발주자가 됨.

(1) 수급사업자

-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말하며(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령 제3조), 중소기업협동조합도 포함.

[중소기업 해당여부]

- 중소기업은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고,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평균매출액 이하여야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제외되고,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이 최다 출자자로서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
- ※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검색 가능

(2) 원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중견기업 포함)
- 중소기업자 중 직전 연간매출액이 20억 원 이상인 사업자(제조업)
- 하도급법상 중견기업의 경우, 대규모중견기업(직전 연간매출액 2조 원 초과)과 소규모중견기업(업종별로 직전 연간매출액이 800억 원~3,000억 원 미만)으로 나뉘어짐. 대규모중견기업과 소규모중견기업이 하도급 관계가 형성될 경우, 소규모중견기업은 대금 지급 관련 규정에 한해서 수급사업자로 보호받음.
 - 소규모 중견기업이 대규모 중견기업으로부터 하도급을 위탁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 규정(60일 대금 지급)이 적용되어 수급사업자로 보호받음.



1.4 법적용 대상거래(제조)

-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용역위탁, 건설위탁, 수리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을 제조 또는 수리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제공하고 그 대가(하도급대금)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하도급법 제2조 제1항).
-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성에 착안하여 "그 업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를 "하도급거래"로 보고 있음.

1.4.1 제조위탁의 유형(사업자가 물품의 제조·판매·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

[제조위탁 대상 여부]

- 회사는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써 조제분유, 발효유, 이유식, 치즈, 커피, 음료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으므로, ① 원·부자재를 납품 받아 제조를 하거나 ② 농협 등의 발주자로부터 위탁 받은 OEM 제품이나 ③ PB상품, ④ 판촉 및 홍보물(산모 및 아기 용품 등)의 단발성 거래 ⑤ 분유 등의 포장용 외박스 부자재의 경우에는 하도급 대상인 제조위탁에 해당됨.
- 규격품·표준품을 구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지 않음(단순구매). 그러나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규격품·표준품 일지라도 가공 등을 시킨 경우에는 제조위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 위탁 받은 사업자가 제조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위탁 받은 물품의 제조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을 받은 것으로 봄. 다만, 무역업자가 제조업자의 요청으로 단순히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으로 보지 아니함.

- ① 판매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OEM거래포함)을 제조 위탁하는 경우
 - 여기서, 위탁범위의 판단기준은 위탁내용이 위탁사업자의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함. 예를 들어, 위탁 받은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신제품을 위탁사업자의 승인 하에 제조하는 경우를 말함.
- ② 물품의 제조·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를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제조위탁하는 경우
 - 판단기준은 완제품의 제조에 투입되는 부품 등을 규격을 지정하여 주문 제작한 것을 의미함. 다만, 이 경우에도 대량생산품목으로 샘플 등에 의해 단순 주문한 것은 제외.
- ③ 물품의 구성에 부수되는 포장용기, 라벨, 견본품, 사용안내서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 ④ 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도장작업, 가공, 조립, 주단조, 도금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1.4.2 하도급거래에서 제외되는 위탁행위

- 자가 소비용의 단순한 일반사무용품의 구매하는 경우
-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 등을 단순히 제조위탁하는 경우
- 위탁 받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제조위탁 하지 않고 단순 구매하여 납품하는 경우



2. 업무 단계별 주요의무 & 금지사항

2.1 계약체결 시

2.1.1 서면 교부 및 서류 보존 의무

■ 개념

○ 서면 교부 의무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간 사후분쟁 예방 필요성 때문에 공정위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하도급법 제3조).

- ① 중요 사항(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 발급
 - 원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정기재사항(6가지)을 작성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제조나 시공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여야 함. 교부된 서면에는 양 당사자 모두의 회사 또는 대표자 명의 기명날인(서명)이 되어 있어야 함.

[법정기재사항]

- ①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 또는 공사의 내용(수량, 단가 포함)
- ②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는 시기 및 장소
- ③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 ④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⑥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 하도급법에서는 발주서면의 양식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발주 시에 하도급법상 요구되는 구체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거나 기본 계약서를 보완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함.

- ② 서면 발급 시점
 -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와 위탁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지체 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최소한 수급사업자가 물품 등의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서면으로 발급하여야 함.
- ③ 보존대상 서면 및 보존 기간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법상 교부하여야 하는 서면 및 하도급 거래의 중요사항을 담은 서면을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기술자료관련서류(기술자료제공요구서 등)는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7년간 보존해야함.

■ 법 위반 유형

-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또는 전부 누락된 서면을 교부한 경우(불완전한 서면교부)
- 추가 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작업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어, 변경 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제조에 착수한 후에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 등 서면을 지연 교부한 경우

- 하도급거래 당사자의 서명,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한 경우
- 실제의 하도급거래와 상이한 서면을 교부한 경우

2.1.2 부당한 특약 설정 금지

■ 개념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때 교부하거나 수령한 **설계도면, 시방서, 유의서, 현장 설명서, 제안요청서, 물량내역서, 계약 및 견적 일반조건·특수조건, 과업내용서, 특약조건, 도급업무내역서, 발주서, 견적서, 계약서, 약정서, 협약서, 합의서, 각서 등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을 통해 설정한 계약조건으로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임(하도급법 제3조의4).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체결한 하도급거래의 계약조건이 공정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① 계약조건이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지 여부
 -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 ③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는지 여부
 - ④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 ⑤ 목적물 등의 내용 및 특성
 - ⑥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 법 위반 유형

- ① 서면에 없는 비용 전가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설명서 등의 서류에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② 민원처리, 산업재해 처리비용 전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③ 입찰내역에 없는 비용 전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다만 수급사업자의 견적 누락 또는 견적 착오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킨 경우는 제외
- ④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전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 ⑤ 설계나 작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비용 전가
원사업자가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⑥ 재작업, 추가 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한 비용 전가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 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다만 해당 작업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



여기서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란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도급계약, 설계도면 등에 기재된 작업공정, 품질·성능검사 절차 등을 철저히 준수한 경우를 말함.

⑦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전가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⑧ 위탁시점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책임 전가

천재지변 또는 전쟁·화재·전염병·폭동, 제3자의 전국적인 노조파업, 매장문화재 발견,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약정

⑨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제한

수급사업자는 원재료의 가격변동이 발생하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직접 신청하거나 원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하도급계약기간 중 이러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경우

2.1.3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 개념

-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는지 여부는 다음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에 ①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②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안됨(하도급법 제4조).

■ 위법성 판단기준

° '부당하게'의 판단기준

부당하다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하도급의 내용, 수단 및 방법, 절차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공정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에 대한 판단 원칙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인지 여부. 단,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는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이 되며, 신규 개발품의 경우는 해당 목적물 등의 제조원가 + 해당 원사업자가 거래 중에 있는 같거나 유사한 업종에 속하는 수급사업자들의 전년도 평균 영업이익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대가를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라고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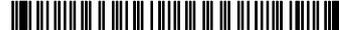
■ 법 위반 유형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 인하(동법 제4조 제2항 제1호)

일률적 단가인하는 제조하도급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행위 중 하나임. 그러나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인지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야 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② 협조 요청 등을 통한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금액 할당(동법 제4조 제2항 제2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협조 등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하여 그 금액만큼을 빼



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임.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사업자를 차별취급(동법 제4조 제2항 제3호)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함. 여기서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수급사업자별 경영상황, 생산능력, 작업의 난이도, 거래규모, 거래의존도, 운송거리·납기·대금지급조건 등의 거래조건, 거래기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존부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차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함.

④ 거래 조건의 착오를 일으키는 등의 방법(동법 제4조 제2항 제4호)

만약,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협상 과정에서 종전 계약보다 발주량이 늘어날 것처럼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⑤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 결정(동법 제4조 제2항 제5호)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결정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및 이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 받지 아니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합의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니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단가를 결정.

⑥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 결정(동법 제4조 제2항 제6호)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여기서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금액에는 재료비, 직접 노무비, 경비(재료비 및 노무비 이외의 제조원가 요소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를 말함, 다만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費目)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법정(法定) 경비는 제외) 등이 포함.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사현장의 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

⑦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 결정(동법 제4조 제2항 제7호)

만약, 원사업자가 실행예산 범위 내에서 최저가 낙찰자와 낙찰금액이 확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로 협상을 한 경우, 법 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당연히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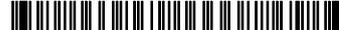
⑧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8호)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가 있음. 여기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는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게 된 사정이 원사업자나 외부환경의 변화 등(예를 들면 경영적자, 임금인상이나 노조파업, 판매부진, 경쟁심화에 따른 판매가격 인하, 글로벌 가격경쟁 심화나 환율변동 등)에 있고, 수급사업자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말함.

2.1.4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 개념

-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內國信用狀)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해주어야 함. (하



도급법 제7조 1항)

-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 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경우 다음 요건 모두 갖춘 때에는 사전 또는 사후 구매확인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주어야 함. (하도급법 제7조 2항)
 - 원사업자가 개설한도 부족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내국신용장 발급이 어려운 경우
 - 수급사업자의 구매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2.1.5 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의무

■ 개념

-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거나 용역위탁한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함.(하도급법 제15조 1항)
-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원사업자가 그때까지 환급을 받지 못하였다더라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함. (하도급법 제15조 2항)
- 원사업자가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연15.5%) 지급해야 함.
(하도급법 제15조 3항)

■ 위법성 판단기준

-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의 판단기준
 - 수급사업자가 기초 원재료 납세증명서 등 관세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인도하지 않거나 지연인도한 경우
 - 관세환급에 필요한 서류상 기지내용이 실거래와 달라 관세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직접 관세등을 환급받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요청으로 원사업자가 관세 환급에 필요한 환급위임장을 지체 발급해준 경우

2.2 계약이행 시

2.2.1 부당한 위탁(발주)취소 및 수령 거부 금지

■ 개념

- ① 부당한 위탁취소(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제조 등의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함. 또한, 위탁을 할 때 정한 발주량 또는 사양 등 위탁한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도 포함됨. 여기서 위탁한 내용을 변경한다는 것에는 다음 세 가지를 포함.
 -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서면에 기재되어 있는 위탁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당초에 위탁 내용과 다른 작업을 시키는 경우
 - 목적물 등의 수령 후 추가적으로 재작업을 시키는 경우



- 위탁 취소 시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위탁취소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고 위탁을 취소하는 것은 가능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는 수급사업자의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등의 경영상 중대한 사유 발생, 영업취소·영업정지 처분,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제조 등의 착수 거부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함.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함.
 - ⑦ 공정위는 위탁 취소에 대한 합의서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합의의 진정성(절차 및 내용)을 검토하여, 진정성이 없는 경우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것으로 봄.

② 부당한 수령거부(동법 제8조 제1항 제2호)

- 수령이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으로 검사의 유무와 관계없이 수취하는 행위를 말함. 다만, 목적물을 이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검사를 시작하는 때를 수령한 때로 봄.
- 부당한 수령거부는 납기일 이후에 수급사업자의 목적물을 수령 또는 인수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지연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 부당한 수령거부의 판단기준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할 때 정한 납기 및 장소에서 목적물 수령을 거부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위탁계약 체결 및 수령거부의 경위, 위탁계약의 내용, 수령 거부한 목적물 등의 범위, 계약 이행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는 부당한 위탁취소와 마찬가지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함.
 - 수급사업자가 직접 조달하기로 한 원재료의 공급지연으로 해당 기간을 넘겨 납품
 - 수급사업자가 직접 조달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하자가 있는 목적물 납품
 - 수급사업자가 생산 또는 운송과정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오손·훼손된 목적물 납품

■ 법위반 유형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
- 계속적 거래를 암시하거나 미지급 물품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발주취소를 한 경우
- 물량감소, 생산취소, 생산지연 등으로 수급사업자와 관련 없는 책임으로 수령을 지연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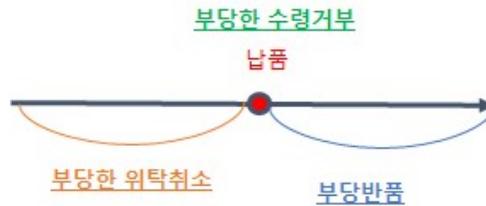
2.2.2 부당반품의 금지

■ 개념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에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에 상관없이 수령한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모든 행위를 말함(하도급법 제10조).

[부당한 위탁취소 vs 부당한 수령거부 vs 부당반품]

- 부당한 위탁취소는 납품 전, 수령거부는 납품하는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부당반품은 납품이 이루어진 이후에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임.



■ 반품의 예외 사유

- 수급사업자의 책임에 따른 반품은 가능
 - ⑧ 발주한 목적물과 다른 물품 등이 납품된 경우
 - ⑨ 오손·훼손 등 하자 있는 물품이 납품된 경우 등

■ 법 위반 유형

◦ 불명확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근거한 반품

검사기준 및 방법을 정하지 않거나 정하긴 하였으나 그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기준을 적용하거나 일방적으로 검사기준을 적용하는 등 공정·타당하지 않은 검사기준 및 방법을 사용하여 목적물 등을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반품하는 경우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을 이유로 한 반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대로 납품한 목적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품하는 것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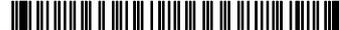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발주중단 또는 클레임
- 원사업자의 생산계획 변경·사양변경·모델단종·판매부진·재고증가·보관 장소 부족
- 소비위축·경제상황 변동 등

◦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한 반품

검사 결과 목적물 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된 이유가 수급사업자의 책임보다는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부자재·건축자재 등 원재료의 품질불량 때문인데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반품하는 것을 말함.

◦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한 반품

만일 원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부자재·건축자재 등을 지연하여 공급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납기 내 납품 등이 곤란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반품하는 경우



-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경우
- 납기지연을 용인한 객관적인 사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기지연을 용인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었음에도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경우
- 하자에 대한 책임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반품할 경우

2.2.3 검사 및 검사 결과 통보 의무

■ 원칙

① 검사기준의 결정방법

- 하도급법에서는 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하도급법 제9조 제1항).
- 다만, 이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객관적인 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협의 하에 제3의 공인기관 등에 의하여 검사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
- 여기서의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여야 하며, 다만, 검사기준의 객관성·공정성에 관한 판단은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음.

② 검사결과의 통지의무

◦ 통지기간

검사결과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여기서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라 함은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며,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함(동법 제9조 제2항).

◦ 통지의무의 예외

검사대상 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하거나 상당기간 경과 후 비로소 합격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 따라서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반품하거나 감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날을 기산일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진행됨.

③ 검사비용문제

- 검사는 원사업자를 위한 것이므로 검사에 따른 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또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제3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검사 결과 통보 의무의 예외

- 검사결과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의무의 예외는 다음과 같음.
 - 검사대상 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 예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 검사와 반품의 관계(대량 납품하는 경우)
 - 대량으로 납품하는 경우 목적물의 전부를 검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샘플검사나 무검사 인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임.
 - 납품 받은 후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하며, 다만 계약서에 반품에 관한 사항(반품사유, 시기, 보상 문제 등)이 명백히 밝혀져 있고, 반품사유가 수급사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것으로 봄.

■ 법 위반 유형

-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와 연결되는 여러 가지 하도급법 위반사항이 있는데, 먼저 검사 기준과 방법에 관해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고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서면 미발급이 있음
- 또한 검사기준이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위탁취소, 수령거부, 반품, 감액, 대금미지급 등의 하도급법 위반사항이 있음. 따라서 원사업자는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에 대한 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실제로 이행하여 사전에 법 위반을 예방하여야 함.

2.2.4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 금지

■ 원칙

-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이 발주 시에 결정한 하도급대금을 발주 후에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감액의 명목과 방법, 금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감액하는 일체의 감액 행위는 금지됨(하도급법 제11조).
- 즉,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이 발주 시에 정해진 금액(발주 시에 즉시 교부하였던 서면에 기재된 금액)으로부터 일정액을 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금지되며, 수급사업자와의 합의가 있어도 하도급법상 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음.

■ 감액의 정당성 판단기준

- 하도급대금 감액의 정당성 유무 여부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감액의 경위, 계약이행 내용, 목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정도, 감액방법과 수단,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됨. 그러나 감액은 명목이나 방법, 시점,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원사업자가 감액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며, 만약 원사업자가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판단.

■ 법 위반 유형

- ① 소급단가 적용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단가인하에 합의를 하였는데, 합의일 이전에 위탁한 목적물에 인하된 단가



를 적용. 이것은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의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의 발주취소

-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 감액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③ 현금지급이나 조기지급을 이유로 감액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④ 원사업자의 손해발생에 영향이 없는 수급사업자의 과오

- 검사에서 합격된 조립용 부품을 보관 창고로 운송하면서, 포장지 훼손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납품 대금의 30%를 감액한 경우

⑤ 원사업자로부터 위탁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

-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면서 적정한 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⑥ 납품시점에 떨어진 물가나 자재가격

-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납품이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들어 감액하는 경우

⑦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⑧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

- 관계법령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그 밖의 경비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2.2.5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 원칙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 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 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이용포함)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됨 (하도급법 제5조)

■ 구매강제물 범위 및 판단기준

- 물품, 장비 및 하도급 계약과 연관성 높은 것 뿐만 아니라 부동산, 상품권, 회원권 등 현실적으로 상당한 구매강제의 목적물이 되고 있다면 규제 대상에 포함됨.
- 직접적 방법으로 인한 강요 뿐만 아니라 자발적 구매로 보이는 상황이라도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에 미칠 영향이나 장래 거래관계를 위해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면 이 역시 강요로 보게 됨.



2.2.6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행위 금지

■ 기술자료란?

- 기술자료란 수급사업자가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자료를 말함.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
 -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 기타 사업자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생산·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 ° 기술자료에 해당하려면 수급사업자에 의해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가능한 상태여야 함.

■ 기술자료 제공 요구

- 기술자료 제공 요구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의 제출, 제시, 개시, 물리적 접근 허용(전자파일 접속·열람허용), 기술지도, 품질관리 등 그 방법을 불문하고 기술자료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함.
-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며, 다만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음(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의미함.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특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특허출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시 하도급대금의 인상폭 결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재료의 원가비중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규명을 위해 하자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발주자의 승인, 품목 등록, 구매조건 등을 이유로 발주자가 해당 자료를 요구하는 등 발주자와의 거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유의할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요구할 때에도,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 지급방법, 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반환 또는 폐기방법, 반환일 또는 폐기일,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을 사전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기술자료제공요구서)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함(동법 제12조의3 제2항).

■ 비밀유지계약 체결의무화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자료에 대해 다음 사항에 대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동법 제12조의3 제3항).
 -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비밀유지의무 위반시 배상
 - 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방법, 기술자료의 반환일 또는 폐기일



■ 기술자료 유용행위

- 기술자료의 유용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를 벗어나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함.
- 원사업자가 취득한 기술자료뿐만 아니라 “열람” 등을 통해 취득한 기술자료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도 대상이 됨(동법 제12조의3 제4항)
- 기술자료 유용의 위법성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사전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제시한 기술자료의 사용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사용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는지를 위주로 판단하게 됨.

<공정성 침해 여부 판단>

-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③ 기술자료 사용의 부당성 여부
 - ④ 하도급거래과정에서 서면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에도 그 합의를 벗어나 사용하였는지 여부
 - 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으로 수급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 ⑥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옳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 손해배상 책임

-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제출을 사전에 서면동의 없이 강제로 요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하고(동법 제35조 제1항),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정당한 대가 지급 없이 유용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배상하여야 함(동법 동조 제2항).
- 다만, 기술요구 또는 유용의 경우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음(동법 동조 제1항, 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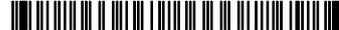
■ 법 위반 유형

① 기술자료제공 강요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비밀유지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거나, 원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정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12조의3 제2항에 따른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제안서 등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재료 가격, 납품단가 구성내역 원가 등이 포함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술지도, 품질관리를 명목으로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들과 재계약시 기술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여 기술자료 제공을 유도하는 경우

② 취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이전계약(기술사용계약 등 포함)을 체결하고 기술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필요한 기술을 취득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종료 후 위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여 그 기술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품을 상용화하거나 무단으로 다른 기업에 기술을 공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아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그 기술을 제공하여 가격경쟁을 하도록 한 후 그 수급사업자에게 납품가격의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의 핵심기술을 탈취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출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선(先) 출원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선점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는 경우

2.2.7. 부당한 경영간섭(전속거래 강요행위 금지 및 경영정보 요구) 금지

■ 원칙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됨 (하도급법 제18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봄.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 전속거래 강요 행위 금지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위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경영상의 정보를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지급 내역 등)를 요구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 관련 정보(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 수급사업자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제품 개발·생산 계획, 판매 계획, 신규투자 계획 등에 관한 정보 등)
- 수급사업자의 영업 관련 정보[거래처 명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납품조건(납품가격을 포함)에 관한 정보 등]
-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2.2.8.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 원칙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



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하도급법 제12조의 2)

■ 위법성 판단기준

- '경제적 이익'은 유,무형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됨.
 - 금전, 유가증권, 물품, 용역, 저작권, 지식재산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종업원 파견에 따른 노무제공 받는것도 포함됨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것도 포함됨
- ° '제공하도록 하는'의 의미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하도급계약의 체결이나 유지를 위하여 원사업자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됨.

■ 법 위반 유형

-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경제적 이익의 제공의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하도급계약에 일반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서울고법 2008.12.8 선고 2008누15253)
- 납품수량의 일정비를 상당분을 손실대비 명목으로 추가하여 무상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 하도급 위탁하면서 일률적으로 물품 매입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판매장려금을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 원사업자의 이익에 기여하는 판촉행사임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판촉행사비용 전액을 부담시키는 경우
- 원사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소유한 골프회원권 또는 미분양 아파트를 수급사업자에게 분양받도록 하는 경우

2.2.9. 보복조치 금지

■ 원칙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하도급법 제19조)
 -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기관등에 신고한 행위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규정에 따라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을 한 경우
 - 관계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 하도급거래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유형

- 원사업자가 기존의 생산계획등에 따라 생산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거나 발주자로부터 예상물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 제19조의 각 호의 신고, 조정신청, 조사협조를 한 수급사업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기존 하도급계약의 물량과 비교하여 발주물량을 축소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



- 하도급법 제19조 각 호의 신고, 조정신청, 조사협조를 한 수급사업자에 대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동안 지급, 제공하던 재료, 자재등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동종업계 다른 원사업자들로 하여금 하도급법 제19조 각 호의 신고, 조정신청, 조사협조를 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거래정지, 수주기회 제한, 상기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 기타 합리성, 객관성이 결여되거나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통용되지 않는 수단, 방법을 활용해 하도급법 제19조 각호의 신고, 조정신청, 조사협조를 한 수급사업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

2.3 대금지급단계의 하도급법상 규제내용

2.3.1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 원칙

- 하도급대금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 원칙적으로, 제조위탁의 경우 목적물 수령일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산정 시 기준일이 됨.
여기서의 목적물 수령일이라 함은 이동이 가능한 물건의 경우 원사업자에게 납품한 날(사실상 원사업자의 지배에 두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동이 불가능한 물건의 경우에는 검사를 개시한 날을 의미함.

■ 60일 이내 대금 지급 원칙의 예외

- 일괄마감제도를 채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일로 봄. 즉, 목적물의 납품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업무의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그 정한 날을 목적물 수령일로 봄.

■ 기간의 계산

-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기간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기간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거래일에 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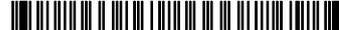
■ 지연이자 지급 의무

-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연 15.5%)를 지급해야 함. 예를 들어, 목적물을 수령하고 90일째 되는 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면 30일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



■ 어음할인료 지급 의무

-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7.5%)를 수급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법정지급기일에 30일이 만기인 어음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30일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함.





■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 지급 의무

- 어음대체결제수단은 하도급대금 지급 시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결제수단으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을 말함. 특히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상환기일까지 해당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함. 수수료율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과 사전에 체결한 수수료율을 적용.

■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

-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음. 따라서 하도급대금은 현금 외에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음. 단,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봄.

■ 법 위반 유형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결제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함에 따른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도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3.2 선급금 지급 의무

- 하도급대금은 물품 등의 납품 또는 시공을 완료한 다음 그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을 기성금이라고 한다. 경우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착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 중 일부를 미리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하도급법상 선급금이라고 함.
- 선급금은 선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일부이므로,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지급 시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어음만기일유지의무나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 지연 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의무 등이 존재함.

■ 원칙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함(하도급법 제6조 제1항)



- 만약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 지급 방법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액에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해야 함.

■ 준수 의무

- ① 현금결제비율유지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을 경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함.
- ② 어음만기일유지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교부 받은 어음의 만기일을 초과하지 않는 어음을 지급해야 함.
- ③ 지연이자 지급 의무
 - 선급금은 선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일부이므로 지연 지급 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주어야 하고, 15일이 지난 이후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함.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1월 15일 선급금을 현금으로 받고 3월 30일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다면, 60일에 대한 지연이자(연15.5%)를 지급해야 함.



■ 법 위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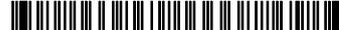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금 또는 어음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경우
-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어음으로 지급하고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으나 이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경우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경우

2.3.3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 원칙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안됨(하도급법 제17조 제1항)

■ 예외사유



-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 원사업자에 대한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대물변제시 서면교부 등 절차

- 원사업자는 대물변제를 하기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 의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기하여야 함.(하도급법 제17조 2항)

■ 대물변제시 하도급대금 채무변제의 범위와 지연이자

- 하도급대금에 미치지 못하는 물품으로 대물변제를 할 경우 법 위반임. 다만, 대물변제된 물품의 시가의 범위 내에 한하여 민사적 유효함.
- 정당한 대물변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지급기일은 일반적인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에 따라야 하고 지급 지체시 하도급법의 지연이자 지급해야 함.

2.3.4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의무

■ 조정절차

① 조정내역 통지

- 원사업자는 설계변경 등에 의해 도급대금이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 해당 도급대금 조정내역을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함. 다만,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별도로 통지할 필요가 없음(하도급법 제16조 제2항).

② 변경계약 체결

- 그 다음으로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과 관련된 변경계약을 해야 함. 즉,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조정 받은 내용을 반영해 주어야 함(동법 제16조 제3항)

③ 조정금액 지급

- 원사업자가 추가금액을 발주자로부터 지급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함(동법 제16조 제4항)

■ 조정기준

① 분명한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

- 설계변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함(동법 제16조 제1항).

② 불분명한 추가금액의 내용

-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평균비율에 따라 지급해야 함.

③ 총액지급 방식

- 총액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면 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 각각에 해당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증액시켜주는 경우에는 적법하나, 수급사업자 각각에 해당하는 비율 미만으로 증액시켜주는 경우에는 위법함.

■ 조정방법

-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준 내용과 비율에 따라 물가변동 대금조정의 경우, 복잡한 개별 품목의 조정방법보다는 전체 계약금액에 물가변동지수를 적용하여 총액조정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만, 품목별 조정방법의 경우 해당 공종별로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은 세부공사 내역별로 조정 받은 내용과 비율로 해야 함.

■ 법 위반 유형

-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추가금액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와 약정이나 국가계약법(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않고 물가변동률이 5%미만이면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을 이유로 조정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함.
- 설계변경 등에 의해 도급대금이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동 또는 물가연동 금액을 수령 받고도 이를 미지급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이나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는 법 위반에 해당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물가연동 금액을 조정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조정하지 않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지연조정 하는 경우는 법 위반에 해당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금액 또는 물가연동 금액을 수령하고도 15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거나 15일을 초과하여 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것으로서 법 위반에 해당함.

2.3.5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협의 개시 의무

■ 수급사업자의 조정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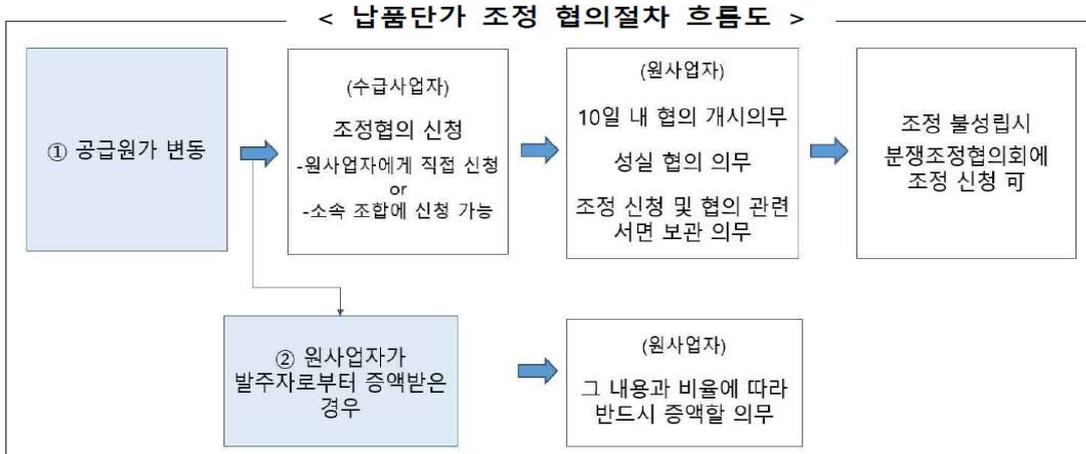
-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하도급법 제16조의2 제1항).
 - ⑦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 ⑧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 ⑨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의 물량이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하락률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
-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제조, 수리, 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추가금액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수급사업자는 별도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음.
-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추가금액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수급사업자는 별도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음.



■ 원사업자의 협의 개시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아니 됨(동법 제16조의2 제7항).
- 구체적인 조정 대금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여야 함.

[납품단가 조정 협의 절차] (공정거래위원회 납품단가조정가이드북, 2022.5,4면)



2.3.6 하도급 대금 연동계약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

■ 개념

-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함('하도급법' 제2조제17항).
-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함('하도급법' 제2조제16항).

[※ 납품단가 연동제(개정 하도급법 제3조, '23년 10월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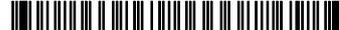
- 수급사업자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는 경우(하도급 거래에서 목적물 등의 제조 또는 용역 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회사(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협의한 비율 대로 하도급 대금을 조정 받을 수 있도록 함, 다만 1억원 이하 계약, 단기 90일 이내 계약, 원·수급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계약서)에 분명히 적시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반영비율

-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반영되는 비율을 말함.
- 변동분의 반영비율을 100%로 정하는 것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도 도입취지에는 부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개별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원·수급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반영비율을 정할 수 있음.

■ 연동절차

- ① 표준 연동계약서의 작성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연동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경우, 연동 대상 하도급거래에 대한 표



준하도급 기본계약서에 부수하여 표준 연동계약서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각자 1부씩 보관하여야 함.

- 연동계약은 연동 대상 하도급거래 최초 체결시 또는 변경된 하도급계약 체결시(하도급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는 경우) 체결해야 함.
- 목적물등의 명칭,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기준지표, 기준시점·비교시점, 조정요건, 조정주기, 조정일, 조정대금 반영일,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반영비율 등을 기재한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를 작성하여야 함.
- ② 변동률 확인 및 하도급대금 산출·조정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연동계약서에서 정한 조정일마다 연동 대상 원재료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목적물 등의 하도급대금을 산출하여야 함.
 - 원사업자는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품등의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조정대금 반영일에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적용함.
- ③ 하도급대금등 변동표 작성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이 조정된 경우 「하도급대금등 변동표」에 조정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하도급대금 등을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날인함.
- ④ 조정된 하도급대금의 지급
 - 원사업자는 표준 연동계약서에 기재된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목적물등에 대하여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 이때, 수급사업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어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 연동계약서 제6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적용하지 않음.
- ⑤ 서류의 비치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연동계약서와 이에 부속되는 「첨부1」, 「첨부2」를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보존기간(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함.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회사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수급사업자에게 연동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천만원(1차), 4천만원(2차), 5천만원(3차)의 과태료나 벌점(5.1점)을 부과받을 수 있음.
- 연동 서면기재사항 위반, 성실 협의의무 위반, 미연동 합의 후 그 취지 및 사유 미기재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 1천만원, 현행 벌점 부과기준 체계에 따라 시정조치 유형별로 0.25~2.0점이 부과될 수 있음.



3. 업무 가이드라인(Do's & Don'ts)

3.1 계약체결시

(1) 서면 교부 및 서류 보존 의무

[Do's]

- 하도급기본계약서에 거래품목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품목에 대하여는 발주전에 개별약정서인 단가합의서(품명, 단가, 적용일시를 기재, 쌍방 날인 필요)를 작성한 후 발주서에 품목(명), 그 단가, 규격 및 성분 등, 수량, 발주일, 입고일, 납품장소 등을 기재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등을 하여야 한다.
- 거래 형태나 거래물품의 특성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 대상 업체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상 거래의 경우, 공정위가 제공하는 업종별 표준하도급 계약서 교부(위탁이전에 교부하고, 양당사자의 기명·날인 필요)를 하여야 한다.
- 원·부자재의 신규품목, 추가 품목 등에 대한 단가 결정시, 양당사자가 기명날인한 개별 단가합의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가 및 적용 시점 기재, 단가 인하의 경우 소급적용 불가).
-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이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연장된 계약기간이 명시된 새로운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 업계 표준이나 거래 관행의 특성을 근거로 한 공정위의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활용하여 서면에 기재해야 할 항목이나 내용에 대해 표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 발주서면에 하도급법상 정해진 사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단가합의서 작성시 협의한 단가 및 적용시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 견적수량과 주문수량이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수량만 적시되어 있고, 단가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서면 교부 시 미확정 사유에 대한 정당성이 존재하여도, 그 내용이 정해진 경우 보충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Don'ts]

- 실거래행위와 다른 거짓서면 및 서류[허위계약일자, 이중계약(실계약, 허위계약), 허위내용의 서류 사후작성 등]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아야 한다.
- 하도급 관련 서류는 증거인멸의 의도로 폐기하지 않아야 한다.
- 협력사에 하도급 관련 서류 등을 3년(기술자료의 경우 7년) 이내에 폐기하도록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 하도급 관련 서류를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서면(서류)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지 않아야 한다(허위서류 보존).
-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없는 불완전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야 한다.



(2) 부당한 특약 설정 금지

[Do's]

- 상품 개발을 거래업체와 공동으로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특정업체와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하도록 하는 전속적 거래에 대한 약정은 가능하다.
-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부당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사전에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규정을 참고해서 특약에 대해 사전 검토를 하여야 한다.
- 수급사업자에게 특약을 사전에 송부하여 검토시간을 충분히 주고, 수급사업자가 특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Don'ts]

- 당사의 사정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운임비용 또는 보관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임비용 또는 보관비용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책임 분담에 관해 편향적인 보상 조항(원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조항)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납품 후 또는 납입한 제품의 가공 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고객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무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
- 불량품이 발생한 경우, 원인 규명을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필요 이상의 비밀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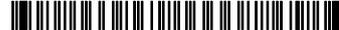
(3)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Do's]

- 최저 입찰금액이 당사의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재입찰한다는 점을 사전에 공지해야 하고 예정가격을 사전에 확정하여 공증을 받는 것이 좋으며, 공증을 받기 어렵다면(비용, 절차상의 번거로움) 사전에 예정가격이 확정되어 있었음을 회사의 기안 문서에 남겨놓아야 한다.
-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때 수급사업자와 협의한 문건은 보관하여야 한다.
- 원재료 가격, 전기 및 가스등의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비용 요청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 비용 변동 시 가격의 재검토가 지체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므로, 가격 결정시 재검토의 시기도 충분히 협의하고, 비용변동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Don'ts]

- 구매 담당자가 구매 관련 목표가를 설정하여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원가 절감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정당한 이유 없이 내수품과 수출품에 대해 동일한 단가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 “경영상의 위기”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동안 낮은 단가 설정을 요구한 경우, 기간 종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낮은 단가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거나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아야 한다.
- 어떠한 명목으로든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아야 한다.
- 수급사업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속이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아야 한다.

(4)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Do's]

- 수출물품 제조위탁시 15일 이내 내국신용장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해주어야 한다.
- 수급사업자의 구매확인서 발급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요청을 해주어야 한다.

[Don'ts]

- 수급사업자의 구매확인서 발급요청이 있음에도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지 않는다.
-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 개설을 생략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

(5) 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의무

[Do's]

- 수출물품 제조위탁시 수급업자가 수출용 원재료 수입하는 경우 관세환급을 절차를 받아 수급업자에게 환급액을 지급해야 한다.
- 수급업자의 책임이 없으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환급금 지급해야 한다.
- 수출품에 대한 관세환급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Don'ts]

-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음에도 환급액을 지연 또는 미지급하지 않는다.
-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없음에도 관세환급에 필요한 환급위임장을 지연 발급하지 않는다.



3.2 계약이행시

(1) 부당한 위탁(발주)취소 및 수령 거부 금지

[Do's]

- 발주취소사유가 사전에 서면의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발주취소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투입된 비용이 있다면 정산하고,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발주취소를 할 경우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를 충분히 마련하여야 한다.
- 수급사업자로부터 물품수령 시에는 검사전이라도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수령증에 검사 미완료 사실 및 향후 검사에서 불량 발견 시 조치계획 등을 기재).
- 위탁취소의 사유가 하도급 거래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고, 위탁취소가 이 계약서에 따른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위탁취소와 관련한 협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위탁취소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 발주취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합의 절차에 강압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를 남겨놓아야 하며,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정당하게 보상하여야 한다.
- 물품 수령 시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Don'ts]

- 당사의 보관 장소 부족, 불명확한 위탁내용·검사기준·납기일, 납기단축 통보, 원자재 공급 지연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않아야 한다.
- 당사의 경영상황 또는 시장여건의 변동, 원자재 공급 지연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해서는 아니 된다.
- 계속적 거래를 암시하거나 미지급 물품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발주취소를 하지 않아야 한다.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면, 수령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
-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작업을 중단하여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작업 중단 전에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작업을 대신하도록 하였고, 작업 중단에 대해 시정요구 및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지 않아야 한다.
- 수급사업자가 선행 작업의 납기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후행 작업의 위탁계약을 취소하였으나 원사업자가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사급자재를 상당기간 지연하여 공급한 사실로 인해 납기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지 않아야 한다.
- 수급사업자가 위탁을 받아 납품한 목적물 중 일부를 당사의 수주실패 또는 지연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
- 당사의 판매계획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가 생산한 제품의 수령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



(2) 부당반품의 금지

[Do's]

- 반품 사유를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전에 설정하여야 한다.
- 클레임약정서는 사전에 교부하여야 한다.
- 사전에 서로 약정된 계약 규정대로 반품을 하되, 반드시 검사결과를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
- 납품된 해당 목적물의 품질이 사전에 약정된 검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해 납품시기가 늦어진 경우에 한해서 반품이 가능하다.

[Don'ts]

- 검사 기준 및 방법이 불명확한 경우,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이를 반품하지 않아야 한다.
- 해당 목적물의 납기일 이후 수령한 목적물을 반품하지 않아야 한다.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당사가 공급한 자재 등의 품질불량 또는 공급지연 등을 이유로 반품하지 않아야 한다.
- 이미 수령한 물품을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지 않아야 한다.
- 발주 착오로 인한 반품, 당사가 물품의 운송이나 보관상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품질상의 하자를 이유로 반품, 가공이나 조립단계에서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반품하지 않아야 한다.
-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사업자의 납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정지연을 이유로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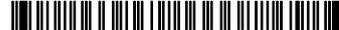
(3) 검사 및 검사 결과 통보 의무

[Do's]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화시켜야 한다.
- 목적물 수령 후 수령증명서와 함께 검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와 명백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연장과 관련한 정당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 당사자 간의 검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객관적인 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제3의 기관에게 검사를 맡기는 것도 가능하다.
- 검사결과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Don'ts]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않아야 한다.
- 법정검사기일(10일)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검사에 불합격하였다는 이유로 반품하거나 대금을 감액하지 않아야 한다.



- 검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지 않아야 한다.
- 법정검사기일 이후에는 반품이나 불량을 이유로 감액을 하지 않아야 한다.

(4)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 금지

[Do's]

-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미리 교부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때 발급하는 서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한다.
 - 감액사유와 기준
 - 감액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 감액금액
 - 공제 등 감액방법
 -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사항 등
- 감액 시 공정위가 정한 표준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대금 산정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착오가 있다는 사실을 원사업자가 발견하여 이를 정당하게 수정하고 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가능하다.
- "환율변동" 또는 "물량증대"에 따른 단가 인하의 경우에는 회사가 수급사업자에게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하도급계약조건에 따라 사전에 감액 기준을 제시)이 있고 그 근거에 따라 단가를 조정하는 것은 적법하며, 절차적인 면에서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음을 근거로 제시(관련 서류를 충분히 수급사업자에게 제공) 하여야 한다.
-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과 다른 목적물 납품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물을 반품하면서 해당 금액만큼 감액할 수 있다.
- 수급사업자가 불량품을 납품하는 경우, 해당 목적물의 금액만큼 감액이 가능하다.
- 수급사업자가 정해진 납기일을 초과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약정된 지체상금 규정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다.

[Don'ts]

- 수급사업자와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위탁이 완료된 목적물에게까지 인하된 새 단가를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 하도급대금에 대한 결제기간 단축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지 않아야 한다.
- 고객사의 발주취소, 현금지급이나 당사의 경영적자 또는 납품가격 인하 등을 이유로 감액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않아야 한다.

(5)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행위 금지

[Do's]

-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때 발급해야 하는 서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한다.
 -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요구 목적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권리귀속관계
 - 기술자료의 대가
 -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 기타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
- 수급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는 향료 및 색소 등 원료 관련 자료는 기술자료에 해당되므로 사전에 기술자료제공 요구서 발급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행위를 한 후 관련 자료를 수령하여야 한다.
-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마다 기술자료 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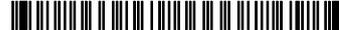
[Don'ts]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 구두로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재료 가격, 납품단가 구성내역 원가 등이 포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 기술지도, 품질관리를 명목으로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 재계약시 기술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여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술자료 제공 요구를 유도하지 않아야 한다.
- 기술자료 요구 시 기술자료 내역,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 인도일 및 인도방법 등을 서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 정당한 대가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지 않아야 한다.
-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 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 받아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그 기술을 제공하여 가격경쟁을 하도록 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납품 단가의 인하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6) 부당한 경영간섭(전속거래 강요행위 금지 및 경영정보 요구) 금지

[Do's]

-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인상협의 시 하도급대금의 인상폭 결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재료의 원가비중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 입찰 시 발주처에서 수급사업자의 원가정보를 필수 제출자료로 지정하여 원가계산서 등 관련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 계약의 특성상 실비를 정산하는 것이 적절한 항목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항목의 실비정산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 다른 법령에 의해 원사업자에게 부여된 수급사업자 관리 및 감독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 원사업자가 상생협력과 공정거래협약 이행을 위해 하도급사에 경영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 산재보험료 산출을 위해 임금대장 등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고, 협약체결에 따른 실적 확인을 위해 수급사업자와의 협약체결 내역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인건비, 복리후생비, 금융비용 등을 지원하고 그 범위 안에서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하도록 요청 내지 권하고, 지급내역을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 수급사업자의 효율성 증진,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급사업자가 컨설팅 받고자 하는 경영전략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업교육, 채용박람회 실시 및 채용연계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채용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Don'ts]

- 협력사에 대해 거래단절, 물량축소 등 불이익을 제공할 것을 거래조건으로 내걸면서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사업자 하고 만 거래하도록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차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2차수급사업자의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 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원가내역, 생산과정, 투입인력, 재료배합 등을 실사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3.3 대금 지급시

(1)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Do's]

- 하도급대금의 지급 기일은 대금 지급기일인 60일 이내에 당사자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Don'ts]

- 수급사업자의 대금 청구 지연을 이유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 수급사업자의 하자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유보하지 않아야 한다.



(2) 선급금 지급 의무

[Do's]

- 계약서상 선급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어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이행 보증서를 지연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수만큼 선급금 지연 지급이 가능하다.
- 수급사업자가 보증한도 부족 등으로 선급금 지급 보증서를 미제출할 경우에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선급금의 내용과 방법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선급금 지급 시 어음만기일유지의무나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Don'ts]

- 수급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선급금 포기 각서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 원사업자의 선급금 지급의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한다.

(3)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의무

[Do's]

- 설계변경 또는 물가연동으로 증액 또는 감액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조정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협의를 완료하고 조정 절차를 마무리하여야 한다.
- 협의 절차가 지연되어 30일이 초과되어 합의가 된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는 일수만큼 지연이자 또는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Don'ts]

- 설계변경 또는 물가연동에 따른 조정을 특약으로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

(4)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협의 개시 의무

[Do's]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를 사전에 하도급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성실히 협의에 응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의록, 이메일, 공



문 등도 같이 보전하여야 한다.

-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요청이 있으며, 조정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Don'ts]

- 수급사업자의 협상 요청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 납품단가 조정 신청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

(5) 하도급 대금 연동계약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

[Do's]

- 회사는 수급사업자와 연동계약 체결시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 회사는 연동계약서 작성시 ①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 등의 명칭, ②주요 원재료, ③조정요건, ④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⑤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⑥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⑦조정일, ⑧조정주기 및 ⑨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회사는 수급사업자와 연동계약서에 정한 조정일마다 변동률을 확인하고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목적물 등의 하도급대금을 산출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품등의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조정대금 반영일에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적용하여야 한다.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연동계약서와 이에 부속되는 하도급대금 연동표·변동표를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Don'ts]

-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된 탈법행위(쪼개기 계약, 미연동합의 강요 유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납품단가 조정 신청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



4. 위반시 제재

4.1 분쟁조정(하도급법 제24조의4 내지 6)

-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기타 조합은 원·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의 분쟁에 대하여 하도급분쟁조정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공정위는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분쟁당사자가 조정조서에 기재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하도급법상 시정조치 등을 하지 아니함.
-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4.2 동의의결(하도급법 제24조9 내지 11)

-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원사업자들은 해당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내용등의 자발적 해결,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등을 위하여 시정방안등을 수립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고, 공정위는 시정방안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의결을 할 수 있음.
- 동의의결 신청인의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정위는 해당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음 (하도급법 제24조의 10, 공정거래법 제91조)
-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의결시 정한 이행기까지 이행하지 아니한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일당 200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하도급법 제 24조의 11)

4.3 시정조치(하도급법 제25조)

- 하도급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음.

4.4 과징금 부과 (하도급법 제25조의3)

- 하도급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수급사업자의 경우도 서류보존의무 위반시 과징금대상).
 - 공정거래법 102조부터 제106조까지를 준용
 - 법위반행위 당시 령 및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므로, 법령 개정 전후를 구분
- 원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개시일 또는 지급요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하도급 대금 지급 자진시정할 경우 과징금 미부과, 단 하도급 대금 미지급 금액 3억원 초과시 자진시정 하더라도 과징금 부과대상임.

4.5 과태료 부과(하도급법 제30조의2)

- 조사 불출석자, 자료제출명령 불이행자는 1억 원, 관련 임직원은 10백만 원 이하 부과
- 조사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2억 원, 관련 임직원은 50백만 원 이하 부과
-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자는 5백만 원 이하 부과



- 공정위 심판정 질서유지명령 미행자는 1백만 원 이하 부과

4.6 벌칙(하도급법 제30조)

- 하도급대금 2배 이하의 벌금

- 법 위반 3회 이상 & 벌점 4점 초과인 경우 원칙적 고발

공정위가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 수급사업자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발요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함(하도급법 제32조).

4.7 양벌규정(하도급법 제31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함.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함.

4.8 손해배상책임(하도급법 제35조)

- 입증책임이 원사업자에게 전환되어 있고, 일부 범위반사항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3배 손해배상소송 대상-부당대금결정, 부당위탁취소, 부당반품, 감액금지, 기술자료 유용, 보복조치)
- 법원 자료제출명령(하도급법 제35조의2) 및 비밀유지명령(하도급법 제35조의3)
 - ⑩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제를 도입하여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 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
 - ⑪ 한편, 소송 과정에서 영업 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의 비밀 유지 명령 조항 및 관련 절차를 마련, 준비 서면 등에 영업 비밀이 포함되는 경우 법원의 명령으로 자료를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는 것 등을 금지할 수 있게 함.

4.9 기타

-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직전(명단공표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누산벌점 4점
- 과징금 가중 사유: 과거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 기준, 직권조사의 경우 자료제출요청일, 출석요청일, 현장조사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 기준)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누산벌점이 2점 이상인 경우 과징금 최대 20% 가중



5. 체크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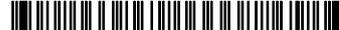
구분(법 조항)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하도급법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입찰공고	• 공지된 입찰 조건에 따라 당사자를 선정하였는가?		
		• 사전 예정가는 적절하게 결정되었는가?		
		• 경쟁입찰로 계약 체결 시, 입찰 및 계약조건을 사전고지 하였는가?		
		• 최초 제시된 낙찰 조건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었는가?		
		• 최저가 입찰 시 최저가 업체를 배제하지는 않았는가?		
		• 유찰 기준은 사전에 고지되었는가?		
		• 유찰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가?		
		• 경쟁입찰로 선정 시, 낙찰된 최저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는 않았는가?		
하도급법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발주 및 계약	• 위탁 이전에 서면이 교부되었는가?		
		• 계약서 없이 선발주 후 보충서면을 교부하였는가?		
		• 계약서 및 발주서 없이 물품제조 및 입고 요청을 하지는 않았는가?		
		• 계약서(단가, 계약조건 변경 등) 작성시 협력사의 서명을 받았는가?		
		• 계약서에 하도급법상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누락된 적이 있지는 않았는가(목적물, 납품시기 및 장소, 검사의 방법, 대금지급방법 및 기일,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 및 방법 절차 등) ?		
		• 추가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 물량 등 사실이 있는 경우, 변경계약서 또는 보충서면, 또는 정산서 등을 교부를 누락하지는 않았는가?		



	서면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 관련 서류(검수, 반품, 대금결정 등)를 3년간(기술자료 관련은 7년) 보관하였는가? 		
하도급법 제3조의 4 (부당한 특약의 금지)	특약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조건이 충분히 협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약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약이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추가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특약을 체결한 적이 있지는 않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 처리 및 산업재해 관련 처리 비용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약정을 설정하지 않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 분담에 관해 원사업자에게만 유리한 편향적인 보상 조항을 설정하지 않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품 후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을 설정하지 않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무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약정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량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필요 이상의 비밀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하지 않았는가? 		
하도급법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대금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금 결정 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대금을 결정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재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는 않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협력사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적이 있지는 않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량증대(다량발주)를 전제로 하여 협력사에게 견적 하도록 한 후, 실제 소량발주가 되었으나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는 않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할인특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는 않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가결정시, 협력사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량발주(물량증대)를 약속하고, 단가결정 후, 그에 못 미치는 발주를 하지는 않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의 계약 대상 업체는 사내 구매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낙찰자가 선정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의 계약 시 시장의 정상가 보다 10%이상 단가 인하를 요구하지는 않았는가? 		
<p style="text-align: center;">하도급법 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p>	<p style="text-align: center;">위탁 취소 및 수령 거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취소가 사전에 서면의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고지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취소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투입된 비용에 대하여 정산이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가 공급하기로 한 원자재 등을 늦게 공급하여, 납기 내 납품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가 딜리,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지는 않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사의 납품수령요구에도 불구하고, 보관장소 부족 등 당사의 사유로 수령을 지연하지는 않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에서 일방적으로 납기를 연기 통보한 적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가 이미 수령한 물품에 대하여 시장에서 물품의 판매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반품하지 않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해지, 거래거절, 거래종료 전 협력사에게 새로운 거래처 선택의 기회 등 충분한 유예기간(1개월)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종료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지 않았는가? 		
하도급법 제10조 (부당반품의 금지)	부당반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가 이미 수령한 물품에 대하여 고객의 클레임을 이유로 반품하지 않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가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 협력사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지 않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사의 납기, 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납기 지연을 이유로 반품하지 않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의 생산계획 취소 등 협력사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하지 않았는가? 		
하도급법 제9조 (검사의 기준·방법·시기)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서 작성 또는 발주 전에 공정한 검사기준 및 방법을 기재(포함) 또는 협의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물 인수를 거부 또는 지연하지 않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에 합의하여 검사기준·방법·시기를 정한 후에 당사가 일방적으로 합의된 사항을 변경하여 검사에 적용하지 않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까지 적용되던 검사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통상 합격품으로 판정될 수 있었던 제품을 불합격 처리하지 않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기준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하지 않고 당사가 일방적으로 검사기준을 정하여 불합격 처리하지 않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합의된 검사 기준 및 방법과 다른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량품 발생을 예상하여 대금지급을 유보하지는 않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협력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기간이 초과된 후, 불량품이 발생하여 반품시킬 경우, 1:1로 교환하였는가? 		
하도급법 11조 (감액금지)	하도급대금 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가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 납품하지 못한 이유로 단가를 인하하지 않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적 거래관계 유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는 않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계약의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제조내역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감액하지는 않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금지급시점의 일반 물가 및 시공에 소요되는 자재가격 등이 계약시점보다 낮아진 것을 이유로 단가를 인하하지는 않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거래에 있어 당사가 환차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당초 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키지는 않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정해진 하도급대금을 인하하지는 않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대금을 인하할 경우, 인하사유와 기준을 해당 협력사에게 사전에 전달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가인하를 일시에 일률적으로 실시하지는 않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가인하 합의 후, 소급해서 단가를 적용하지 않았는가? 		
하도급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대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사업자에게 하자 이행을 위해 하자이행증권과 별개로 일정금액의 하도급대금을 유보하지는 않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고하여 검사가 완료된 날을 기준하여 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사와 거래의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는 경우, 협력사로부터 거래대금과 매출대금의 상계처리여부에 대하여 협의없이 상계 처리하지는 않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금지급 시, 자사 및 기타회사의 물품으로 대금을 지급한 적이 있는가? 		
하도급법 제16조의 2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하도급대금의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자재가격변동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 개시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상황 변동(물가변동 등)에 따른 단가반영요청 시 10일 이내에 협의 절차가 개시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졌는가? 		
하도급법 제12조의 3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기술자료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기술자료를 요구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자료 요구 시 사전에 서면을 교부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에 기술자료 내역,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 인도일 및 인도방법 등을 적시하여 제공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비밀유지계약서를 교부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적인 원가자료 요구 시 서면으로 요구하였는가? 		
		기술자료 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기존 계약을 파기하지는 않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임의적으로 협력사나 계열회사에 제공하지 않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선출원하였는가? 			



<p>하도급법 제12조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 지)</p>	<p>사급자재 및 장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사에게 제조에 필요한 자재 등을 당사로부터 구매하도록 하고, 물품을 납품하기도 전에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였는가? 		
<p>하도급법 제18조(부 당한 경영간섭의 금 지) 및 동법 제19조 (보복조치의 금지)</p>	<p>경영간섭 및 보복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등을 제한하지는 않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사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이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 목적과 관계없이 2차 협력사의 선정, 계약조건 설정 등의 재하도급 거래내용을 제한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사의 경영자료 등 일방적으로 자료를 징구하거나 인사청탁을 명목으로 경영에 간섭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물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물량을 구입한다는 조건하에 생산설비를 증설(투자)하도록 하게하고, 거래물량을 축소하거나 거래중단을 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사가 당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한다는 사유로 거래중단 또는 거래물량을 축소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예고기간 없이 거래중단 및 물량축소를 하였는가? 		

